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3 |
|----------|-----|

| |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
-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자원 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제1조, 제2조)
-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조직구성, 자원봉사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제4조 내지 제7조)
-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10조)

-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11조 내지 제16조)**

3. 외안전문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이하 “자원봉사활동”이라 한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
2.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3. 자원봉사 교육 및 상담
4. 방법활동·교통 및 기초설서제도
5.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 지원
6. 문화·관광·예술·체육활동에 관한 봉사활동
7.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자원봉사센터

제4조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

2.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단체,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지원
5.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제6조 (조직구성) ①센터에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약간명을 둔다.

②센터에 두는 인원의 선발방법, 임기,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등록 등) 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소장은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 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제8조 (센터의 지원·위탁운영) ①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소장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소장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소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위원회

제11조 (설치)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자원봉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개발·조정 및 협의
3. 중·장기 자원봉사 정책방향의 설정
4. 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②위원은 자원봉사관련 단체 대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생략)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